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9.

運 營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60호로 2020년 10월 8일 정선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혁신하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2020. 10. 8. ~ 10. 1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제2항에 「지방자치법」 제88조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음.
-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에 출석정지 징계시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을 2분의 1 감액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는 출석정지에 대해 수당 지급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제5조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출석정지 기간 중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지자체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2020.10.12.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써 보다 엄격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에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2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